



지원금 지원 조건

구 분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	*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
	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·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	
환수해지	만기 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	*본인적립금과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
	중도 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- 본인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	



자주 묻는 질문

Q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?

- A 1. 지속적인 근로활동
2.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(전월23일~당월22일, 주말·공휴일은 익일 반영)

Q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- A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(3년) 중 총 6개월간 **적립중지**가 가능합니다.(사전신청, 본인 적금 납입 불가,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)
※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**군 입대,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퇴직,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2년** 가능합니다.

Q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?

- A · 교육방법 :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,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 필수(온라인 교육만 인정)

Q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한가요?

- A 가능합니다.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다릅니다.



통장이 만기가 되었어요!

① 해지신청서류·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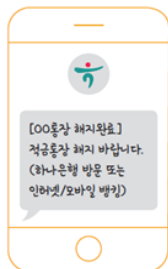
- ★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세요.

② 해지완료 알림 대기(수일 소요)

- 접수된 서류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

③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기

- ★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
★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·스마트폰뱅킹(어플)에서 해지가능



평동~
해지완료문자가 왔어요!
주의! 해지 완료
알림 문자를 받은
경우에만 통장 해지가
가능합니다.

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~4배로 돌려주는

청년내일저축계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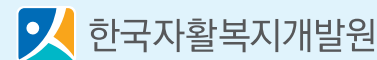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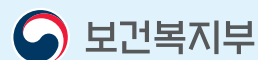


문의처
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
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

2023년 모집일정

신청 접수

5.1(월) ~ 5.26(금)

- ▶ 신청시작 2주간(5/1~12일) : 출생일 기준 5부제
- 월(1, 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,6인 청년
- 화(2, 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,7인 청년
- 수(3, 10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,8인 청년
- 목(4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,9 및 5,0인 청년 / 11일에는 4,9인 청년
- 금(12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,0인 청년

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

8.1(화)~8.22(화)

1. 신청 결과 통보받기(확정 여부 확인 필요)
2.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
3. 본인 적립금(10~50만원)저축하기
4. 자산형성포털 가입
5.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



접수처

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

복지로



*5.15(월)~5.26(금) 온라인 신청 가능

지원대상

구분	차상위 이하	차상위 초과
가구소득	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	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	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**
근로기준	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	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가구재산	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	
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
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지원내용(3년 만기)

○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○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·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23년 가입자 72만원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비대면 통장개설 방법

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

-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→ 알림톡 내 링크 접속(<https://bit.ly/희망브랜치>)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

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, 삭제했을 경우

-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



가입 신청 서류

구분		제출서류	
필수서류 (공통) *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		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서 포함)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·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⑨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
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"필수" 제출서류입니다.			
소득 증빙 서류 (필수)	근로 소득	상시근로자	① 재직증명서
		일용근로자	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*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	사업 소득	기타 사업소득	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②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
		농림 축산업	● 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족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* 발급처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** 발급처: 지자체 ③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
		어업소득	● 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* 발급처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★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재산 조사관련		●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● 전·월세: 임대차계약서 ● 사업장 운영: 상가 임대차계약서	
부채 관련 증빙서류 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		●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 ●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	

*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분증,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비